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4. 6. 18 선고 2023가단16665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름길

담당변호사 박경수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5. 21.

판 결 선 고 2024. 6. 18.

주 문

- 피고와 C 사이에 서울 노원구 D 대 706㎡ 중 30/100 지분에 관하여 2023. 10. 11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.
- 피고는 C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. 10. 16. 접수 제15167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가합3039호로 위약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, 위 법원은 2011. 1. 20. “C은 원고에게 324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. 3. 11.부터 2011. 1. 20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”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,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.

나. C은 채무초과 상태이던 2023. 10. 11. 피고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서울 노원구 D 대 706㎡ 중 30/100 지분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, C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. 10. 16. 접수 제151671호로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3, 5호증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

나.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C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.

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판결이 2011. 3. 10.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,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23. 12. 5.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나, 한편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14. 6. 17.경 위 판결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C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E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위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집행이 실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, 위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무렵 중단되었다.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다.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

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태균